

제266회 정례회
2007. 11. 21(수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

건설문화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11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일

3. 제안이유

-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제도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방식의 주소체제로 전면 개편토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1.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

-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해당 시장·군수에게 통지토록 함(안 제3조)
- 2개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(안 제4조)

2.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

-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함(안 제5조)
-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·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(안 제6조)
- 도지사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·실시 또는 협조,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함(안 제7조~제8조)

3.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- 새주소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9조~제15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
- 제7조2호 단서에서 “이 경우 방문교사 지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” 라고 규정하는 바 “방문교사”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 필요하며,
- 별지1호서식의 “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신청서”에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5항에 2개시·군에 걸쳐있는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, 제7조제3항에서도 2개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의 부여나 변경시에는 도지사와의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, 별지1호서식의 명칭 내용 중 “조정”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